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60
------	-----

제출년월일:2000. 11. 28.

제 출 자: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의 신설된 7급까지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지방세면제 확대 요청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적용의 규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6급에서 1-7급으로 감면대상 확대(안 제2조)

나.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 폐지로 지역보증재단법 적용(안 제21조)

3. 참고사항

○ 관련공문 : 도 세정 13400 - 10476호 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

○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제2000 - 319호(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본문 : 불임참조.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중 “1급 내지 6급”을 “1급 내지 7급”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용보증제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중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용조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하며,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을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단서생략)</p> <p>제21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u>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u>에 의하여 설립된 <u>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u>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u>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u>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1급 ----- 7급 ----- ----- ----- ----- ----- ----- ----- ----- ----- ----- ----- ----- ----- ----- -----</p> <p>(현행과 같음)</p> <p>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u>지역신용보증재단법</u>----- -----<u>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u>----- ----- ----- ----- ----- ----- ----- ----- ----- ----- ----- ----- ----- ----- ----- <u>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u>----- -----</p>